

#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유정희 의원 외 9명
- 나. 의안번호: 제1509호
- 다. 발의일자: 2020. 5. 25.
- 라. 회부일자: 2020. 5. 29.

### 2. 제 안 사 유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법률 제16307호, 2019.4.2. 공포, 2020.4.3. 시행)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환경부령 제858호, 2020.4.3. 시행)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추가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3. 주 요 내 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함(제5조)
- 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추가함(별표)

##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추가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2019년 4월 2일,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2020년 4월 3일부터 현행법 적용대상에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이 추가되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

다만,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2019년 4월 개정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둔 이후 지난 4월에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예기간 동안 동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해당 부서에서 상위법 개정 및 시행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임.

- 또한,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다중이용시설 대상에 추가되는 시설은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이외에도 영화상영관 등 5개<sup>1)</sup> 시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영화상영관 등 5개 시설은 2015년 12월에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시설 항목임.

---

1)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현재까지 상위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영화상영관 등 5개 시설들을 차질 없이 관리해 왔다고는 하나, 약 4년 동안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누락되었던 점은 문제가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상위법 개정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임.

〈조례 개정 전·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mu\text{g}/\text{m}^3$ )	...	...
개정 전	개정 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및 찜질방, 대규모점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현행과 같음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b>실내 어린이놀이시설</b>	현행과 같음		